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

의안 번호 877

제안년월일 : 2011년 12월 일 제 안 자 : 고호근 의위 외 7명

1. 제안이유

○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에 대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·사업장의 책무 및 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의 수립 (안 제3조 내지 제5조)
- 나.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예방센터의 설치(안 제6조 및 제7조)
- 다.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자살시도자 가족 등에 대한 의료적 지원규정(안 제8조)
- 라. 자살예방의 날 지정 및 교육 등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(안 제9조)
- 마. 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(안 제10조)

3. 근거법규

- ○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4조 ☞ 2012. 3. 31 시행예정
- 4. 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 나. 입법예고 사항 : 해당없음

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함으로써,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민의 권리와 의무)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 -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구청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(이하 "자살위험자"라 한다)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,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 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 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사업주의 책무) ① 사업주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'자살예방기본계획' 및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하는 '자살예방시행계획'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(이하 "세부추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자살예방 세부추진계획의 목표, 과제 및 방향
 - 2. 생명존중문화의 조성,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
 - 3.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 - 4. 자살예방을 위한 인력교육체계의 강화사항
 - 5.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·감시체계의 구축사항
 - 6.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한 인프라 구축사항
 - 7.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
- 제6조(자살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,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살실태조사를 전문 조사·연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제7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구청장은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 센터(이하
 - "자살예방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「정신보건법」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두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- 제8조(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)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,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, 상담치료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9조(생명존중문화 조성 등) ①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

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,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 및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, 자살예방의 날부 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.
- ③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.
- ④ 구청장은 법 제19조의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・운영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자살예방 기관·단체 등의 지원)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 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1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 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2. 3. 31부터 시행한다. 단, 제6조제2항의 정신보건센터 관련 사항은 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의2에 따라 중구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될 때 적용한다.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877)

1. 의 안 명 : 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·제출자 : 2011. 12. 5(월)·고호근 의원 외 7명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1. 12. 5(월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1. 12. 9(금)

3. 제안설명요지

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 행 하고,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함

4. 주요내용

- 가. 자살예방 세부추진계획의 수립
- 나.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예방센터의 설치
- 다.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자살 시도자 가족 등에 대한 의 료적 지원규정
- 라. 자살예방의 날 지정 및 교육 등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
- 마. 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
- 5. 관련법규: 「자살예방 및 생존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
6. 검토의견

- O 본 조례 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에 대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존중하 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서
- O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으로는 광역3개, 기초는 울산 북구 등 4 개 자치단체에서 기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
- 자살실태조사, 자살예방센터 설치, 자살예방의 날과 자살예방 주간 설치·교육 등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 여 자살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제정 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